

연세대학교 상경 · 경영대학 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칙

목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 제 3 조
제2장 상 경 · 경 영 대 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1절 통 칙	제 4 조 ~ 제 14 조
제2절 선 거 의 관 리	제 15 조 ~ 제 16 조
제3절 학 생 총 투 표 의 관 리	제 17 조 ~ 제 17 조
제4절 재 정	제 18 조 ~ 제 22 조
제3장 상 경 · 경 영 대 학 학 생 회 선 거	
제1절 통 칙	제 23 조 ~ 제 28 조
제2절 선 거 권 과 피 선 거 권	제 29 조 ~ 제 31 조
제3절 상 경 · 경 영 대 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제 32 조 ~ 제 36 조
제4절 선 거 공 고 와 입 후 보 등 록	제 37 조 ~ 제 50 조
제5절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	제 51 조 ~ 제 54 조
제6절 시 행 세 칙 협 의 모 임	제 55 조 ~ 제 58 조
제7절 선 거 운 동	제 59 조 ~ 제 70 조
제8절 투 표	제 71 조 ~ 제 86 조
제9절 참 관 인	제 87 조 ~ 제 90 조
제10절 개 표	제 91 조 ~ 제 100 조
제11절 당 선 공 고 와 이 의 제 기	제 101 조 ~ 제 103 조
제12절 선 거 부 정	제 104 조 ~ 제 105 조
제13절 당 선 무 효	제 106 조 ~ 제 107 조
제14절 재 선 거	제 108 조 ~ 제 108 조
제15절 징 계	제 109 조 ~ 제 110 조
제16절 선 거 의 종 료	제 111 조 ~ 제 112 조
제4장 상 경 · 경 영 대 학 학생총투표	
제1절 통 칙	제 113 조 ~ 제 115 조
제2절 투 표	제 116 조 ~ 제 130 조
제3절 개 표	제 131 조 ~ 제 138 조
제4절 의 결 사 항 공 고 와 이 의 제 기	제 139 조 ~ 제 141 조
제5절 학 생 총 투 표 의 종 료	제 142 조 ~ 제 143 조

2017.03.07. 제 정
2017.10.26. 일부개정
2018.03.06. 일부개정
2019.03.21. 일부개정
2021.10.05. 전부개정
2022.03.04. 일부개정
2023.09.13.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회원(연세대학교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에 재적 중인 모든 학부생을 의미하며, 이하 “본회의 회원”이라 한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상경·경영대학 반 학생회 선거(이하 “반선거”라 한다)는 본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상경·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른다.

제3조(세칙 밖의 판단) ①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상경·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상운위”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선관위”라 한다)는 전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① 상선관위는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

② 상선관위는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제5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상선관위는 상운위에서 선임하고 인준한 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상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이하 “상선관위원”이라 한다)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상운위는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장단, 각 반 학생회장단, 상경·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 중에서 상선관위원을 선임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③ 상확운위는 상선관위의 구성이 상운위원만으로 불가능할 경우 상경·경영대학 확대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신설 2023. 09. 13>

④ 상선관위원은 임기 동안 전항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하였던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상선관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⑤ 상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상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 인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상선관위의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상운위는 상선관위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구성하여 중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상선관위원의 임기는 상선관위가 구성된 때로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장) ① 상선관위장은 상선관위를 대표한다.

② 상선관위장은 상선관위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상선관위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선관위장 직을 승계한다.

1. 상선관위는 상선관위장이 궐위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 1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
2. 상선관위는 상선관위원 중 1인을 상선관위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상운위에 상정한다.
3. 상운위는 선임된 상선관위장을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8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① 상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의 모든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① 상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상선관위 회의에서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선관위 회의는 상선관위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④ 상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선관위는 상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상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상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대우관 본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13)
2. 경영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12) <개정 2023. 09. 13>

제11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자격박탈) ① 본회의 회원은 상선관위원이 제8조, 제15조, 제17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상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을 통하여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고 상운위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운위의 의장은 3일 이내에 상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운위의 의장이 상선관위원일 경우 상운위는 자동으로 소집되며 상선관위원이 아닌 상경·경영대학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야 한다.

③ 상운위는 사안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파악하여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상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3>

④ 전항에 따라 상선관위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상운위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상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 ① 상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상운위는 상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운위는 해체한 상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상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상운위는 상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① 본회의 회원은 상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선본원은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선관위는 이의가 제기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한다.

제14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본회의 회원은 상선관위가 제15조제15항 또는 제16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중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선본원은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의 관리

제15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무와 역할) ① 상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상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상선관위는 본회의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상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⑥ 상선관위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에서 각종 공고와 선전물, 유세에 후보자의 학년과 학년 중 무엇을 표기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 ⑦ 상선관위는 선본과의 협의를 거쳐 선본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⑧ 상선관위는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경고” 조치한 선본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⑨ 상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⑩ 상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⑪ 상선관위는 특정 선본·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⑫ 상선관위는 상경·경영대학 학생회비를 통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며, 필요한 경우 선본으로부터 자료집·포스터,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 ⑬ 상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상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 ⑭ 상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선본·후보자의 자격박탈
 2. 재선거
 3. 선거일정의 조정
 4. 당선무효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⑮ 상선관위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중선관위로 이관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⑯ 상선관위는 이관한 사안에 대한 중선관위의 결정·지침을 이행한다.

제16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 상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3절 학생총투표의 관리

제17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의무와 역할) ① 상선관위는 상경·경영대학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상선관위는 본회의 회원에게 각종 학생총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학생총투표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상선관위는 학생총투표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⑥ 상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⑦ 상선관위는 상경·경영대학 학생회비를 통하여 학생총투표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한다.
- ⑧ 상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재투표

2. 투표일정의 조정
3. 의결의 무효
4.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제4절 재정

제18조(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상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① 선거비용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비를 통하여 조달한다.
② 상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각 선본으로부터 자료집·포스터,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본부의 분담금) ① 상선관위는 분담금의 액수를 선본의 입후보 등록 이후 48시간 이내에 각 선본에 통보한다.
② 각 선본은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상선관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선본이 분담금을 마감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선관위는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④ 상선관위는 각 선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① 상선관위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 공고일 전까지 상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운위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검토하고 이를 상경·경영대학 학생회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③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상선관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① 상선관위는 상운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산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는 각 항목별로 결산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선관위는 선거의 결산을 선거의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상운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상선관위는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 09. 13>

제3장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선거

제1절 통칙

제23조(선거시행원칙) ①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시기)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학기 말에 시행한다. 단, 2학기 말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다음 해 1학기 초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개정 2023. 09. 13>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5조(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추천인 서명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예비등록
3. 추천인 서명 기간

제26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당선 확정 공고 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 등록 및 공고
2. 선거운동기간
3. 투표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당선확정 공고

② 상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27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본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학내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 토론회 등을 보도·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9조(선거권) ①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후 기준,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에게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후 기준,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상선관위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제30조(선거인명부) ①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소속·학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선관위에 선거인명부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선관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피선거권)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제3절 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

제32조(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지위) 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는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제33조(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구성) 본회의 상선관위원과 각 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4조(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역할) ① 본 세칙과 반 선거시행세칙을 비교·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속한 학생회 선거에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개표 방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확정한다.

- 제35조(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운영)** ① 모든 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반선거관위”라 한다)의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상선거관위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상선거관위가 주재한다.

제36조(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 기속) 상경·경영대학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는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를 기속한다.

제4절 선거공고와 입후보등록

제37조(선거공고) 상선거관은 선거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예비등록)** ① 예비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기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여,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상선거관이 공고한 예비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상선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본의 명칭
 2. 선본의 색상 (RGB 코드)
 3.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4.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④ 반선거의 예비등록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선거의 예비등록이 마감된 이후에 진행한다.
 ⑤ 상선거관은 예비등록 구비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모든 반선거관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⑥ 선본이 예비등록 시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상선거관은 해당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⑦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선본이 등록을 하는 경우, 상선거관은 해당 선본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제39조(입후보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상선거관이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상선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7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제8호나 제9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제10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8호와 제9호는 내용상 동일하여야 한다.
 1. hwp 또는 docx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
 2.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개정 2023. 09. 13>
 3. hwp 또는 docx 형식의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4. 정·부후보 재학증명서 각 1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적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각 1매)
 5. 정·부후보 컬러 및 흑백 사진 파일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7. hwp 또는 docx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8.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188*257mm, CMYK, 300dpi)
 9. hwp 또는 docx 형식의 시각장애학생용 국문본 정책자료집
 10. hwp 또는 docx 형식의 상선거관 포스터용 정책파일
 ③ 전항의 제8호와 제9호의 경우 영문본 정책자료집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문본 정책자료집과 내용 상 동일하여야 한다.
 ④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또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⑤ 상선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입후보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상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단체의 자격을 심사하고 상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06시까지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2. 선본이 등록일 18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상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조치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3. 등록일 18시 30분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제40조(선거운동본부 명칭)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명을 입후보 등록 시 상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본명의 제한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선본명의 제한여부와 관련하여 상운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선관위장은 이를 상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선거운동본부 색상)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상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본색의 제한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선본색의 제한여부와 관련하여 상운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선관위장은 이를 상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42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사무실(이하 “선본방”이라 한다)을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하로 둘 수 있다.

1. 신촌캠퍼스 대우관 본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13)
2. 신촌캠퍼스 경영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12) <개정 2023. 09. 13>
3.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②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본방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상선관위에 선본방의 사용을 인준 받아야 한다.

-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본방 외에는 선본옷과 제62조에 해당하는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
- ⑤ 선본원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상경·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기타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기구)의 사무실. 다만,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실(대우관, 경영관) 중 한 곳 그리고 반방, 동아리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09. 13>
 2. 학내 언론단체의 사무실
 3.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4. 상경·경영대학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제43조(선거운동본부원)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선본원은 본회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상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휴학생의 경우 각 선본은 상선관위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본원 등록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④ 모든 선본원은 학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본부장) ① 선본장은 해당 선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선본원 중 1인이어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선본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상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선본장은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시세협 참여
2. 시세협 소집 요청
3. 이의제기
4. 그 밖에 선본의 주장을 대변

제45조(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본에 가입할 수 없다.

1. 상선관위원
2. 학생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상경·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상경·경영대학 각 반 학생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기구)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
3. 학내 언론단체의 구성원
4.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상경·경영대학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
6.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
7. 기타 상선관위가 각 호에 준한다고 판단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

제46조(선거운동본부 가입을 위한 사퇴) ① 제4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본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상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의 마감일 7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상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사퇴 확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퇴서는 제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⑥ 사퇴서 수리기간과 선본원 등록기간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제47조(추천인 서명) ①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에 대한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③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전향을 벗어나는 범위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선본위에 준하는 통일성을 띤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상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성명·약력 및 출마의 변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오피스구호·기치·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상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⑥ 상선관위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일련번호 묶음은 10개를 넘을 수 없다.
- ⑦ 상선관위는 11개 이상의 연서판을 적발하였을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⑧ 모든 연서판에는 상선관위 명의를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⑨ 이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제48조(정책자료집) ① 정책자료집은 각 선본에서 상선관위에 입후보 마감시한까지 제출하고 상선관위가 합본하여 출력한다.

- ② 정책자료집의 분량은 40쪽 이하로 제한한다.
- ③ 출판비는 상선관위 판단에 따라 상경·경영대학 학생회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부담하거나 비용 전체를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④ 각 선본은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본의 정책만을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상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⑤ 상선관위는 선본이 정책자료집을 개인 유세를 위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상선관위는 정책자료집을 상선관위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정책자료집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① 상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허위사실의 검수를 완료하고 각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선본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본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서면을 통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전항의 이의가 제기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인정 여부를 해당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본은 즉시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상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⑦ 단순 오타자는 허위사실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등록무효) ① 입후보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본·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 상선관위는 선본의 등록을 유효로 처리하고 해당 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23. 09. 13>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즉시 상선관위는 해당 선본·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와 함께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

제51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교육의 목적) 상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상선관위원, 후보자, 선본원에게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교육의 구성)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인권 교육은 학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제53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교육의 대상) ①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상선관위원
- 2. 후보자
- 3. 선본원
- ② 상선관위는 상선관위 회의에서 상선관위원 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최소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각 선본의 후보자 및 선본장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시세협에서 각 선본의 선본장을 제외한 선본원 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최소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3>

제54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후보자 또는 선본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또는 선본장이 속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② 선본이 제53조제4항에 따라 정하여진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

고” 조치할 수 있다.

제6절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55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① 시세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②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본 세칙에 준한다.

제56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상선관위원과 선본장으로 구성한다.

제57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① 상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이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② 본 세칙은 시세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상선관위는 본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한다.

제58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① 상선관위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일
2. 합동유세의 전달
3. 투표의 전달
4. 개표의 전달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본의 선본장은 상선관위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본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선본장은 즉시 위임 사실과 사유를 상선관위에 알려야 하며 상선관위는 위임의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상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상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유권해석하여야 한다.

⑥ 상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상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7절 선거운동

제59조(선거운동의 정의)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중립적 투표독려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선본에 참여하여 선본원으로서 본 세칙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선전
2. 선본·후보자의 개인유세
3. 선본·후보자의 강의실유세
4. 선본·후보자의 단체·모임 방문유세
5. 선본·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유세
6.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7. 선본·후보자의 합동유세
8. 선본·후보자의 정책토론회

- 제61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 시부터 투표전날 18시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이외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상선관위에서 심의·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시세협에서 선거운동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⑤ 선본이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상선관위는 사안의 경위와 의도성 등을 판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제62조(유세 선전물)** ① 유세의 선전물은 인쇄매체·중형선전물·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
- ② 상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중형선전물은 상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
 2. 리플렛,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흑백으로 제작
 3. 상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
 4. 상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 ③ 선본의 선전물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④ 인쇄매체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하며 제1호와 제2호를 합하여 3종으로 제한한다.
1. 다음 각 목을 준수한 신문
 - 가. 신문은 신문용지 전판으로 하며 면수는 4면 이하로 한다.
 - 나. 반드시 흑백으로 하며 재질은 신문용지 이하(80g 이하, 코팅금지)로 한다.
 2. 다음 각 목을 준수한 리플렛
 - 가. 리플렛의 크기는 A4(210*297mm) 3매 이하로 한다.
 - 나. 컬러인쇄는 금지한다.
 - 다. 재질은 아트지 또는 스노우지로 하며 코팅은 금지한다.
- ⑤ 각 선본은 상선관위에서 정한 날 06시부터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
1. 중형선전물은 A0 전지 2매(840*2376mm)의 크기로 한다.
 2. 현수막을 실사로 출력할 시 색상은 총천연색 4도 이하로 한다.
 3. 중형선전물의 종류는 두 종류까지 허용하며 한 종류 당 허용개수는 상선관위 회의에서 정한다.
 4. 각 선본은 상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
- ⑥ 각 선본은 선거운동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피켓을 사용할 수 있다.
1. 피켓의 크기는 4·6판 계열 4절(545*788mm) 이하이며 개수는 10개 이하, 재질은 우드락으로 한다.
 2. 색상은 한 가지 바탕색과 흑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출력·부착하되 후보자의 사진은 부착할 수 없다.
 3. 피켓의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하로 일괄 교체할 수 있다.
 4.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소재로 포장할 수 있다.
 5. 피켓은 항시 선본원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본원이 없는 곳에 방치할 수 없다.
- ⑦ 선본옷은 바탕색을 한 가지 색상으로 하며 나염은 총 두 가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염은 등과 왼쪽 가슴 부위에 인쇄할 수 있다.
- ⑧ 모든 선전물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선본방을 제외한 장소에 배치할 수 없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어길 경우 상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모든 부착형 선전물은 각 선본에서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06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19시까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제63조(온라인 선거유세)**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각 선본의 게시판 혹은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3>

2.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의 회원의 의견개진과 후보자의 정보, 정책자료집, 선본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한다.
3. 각 선본은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게시 횟수, 구체적인 게시처 및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합의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상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64조(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내 언론단체를 통한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여부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학내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①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다만,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하여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촌캠퍼스 1차 합동유세
2. 국제캠퍼스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3. 신촌캠퍼스 정책토론회
4. 신촌캠퍼스 2차 합동유세
- ②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시세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③ 각 선본의 후보자들은 유세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합동유세의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상선관위는 선본·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합동유세의 시간을 결정한다. 다만, 한 선본의 유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상선관위는 선본의 유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고, 25분을 초과할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5분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⑥ 상선관위는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⑦ 상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연세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66조(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① 합동유세 시간 동안 상선관위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학생회 선거유세를 전면 금한다. 다만, 선본옷의 착용은 허용한다.

- ②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시간에만 유세장에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상선관위는 다른 선본의 유세시간에 선전물 배포, 깃발 흔들기, 구호 외치기 및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본에 “주의” 조치할 수 있다.

제67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①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세협에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68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과·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2. 학내 언론단체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4. 상경·경영대학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 ② 선본은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상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상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9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상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강의실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의 후보자는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 유세에서 정정발언·사과발언을 하여야 한다.
- ③ 상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단순 오탈자는 허위사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70조(선거비용의 제한과 공개)** ① 상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한도를 첫 번째 시세협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② 상선관위는 선본이 상선관위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③ 각 선본은 선거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하여 투표 전날 09시부터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상선관위가 지정한 학내 장소와 상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결산이 미비한 경우
 2.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3. 투표 전날 09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결산의 공개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8절 투표

- 제71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 ②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③ 투표는 전자투표로 하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한 용지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2조(점자투표보조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의 내용과 크기는 상선관위에서 정한다.

제73조(투표기간) 상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3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4>

제74조(투표기간의 연장) 제73조에 따른 투표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상선관위는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시간) 상선관위는 투표기간 중 구체적인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6조(투표시간의 연장) 제73조에 따른 투표 마지막일과 제74조에 따른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7조(투표구의 지정)** ① 상선관위는 투표 절차의 상세한 안내와 시각장애인용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투표구를 지정한다.
- ②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한 개 이상 지정한다.
1. 신촌캠퍼스
 2. 국제캠퍼스
- ③ 상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투표소의 설치) ① 상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상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개정 2023. 09. 13>
 - 1. 해당 투표소의 상선관위원
 - 2.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 3.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에 동행한 도우미
- ④ 상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79조(투표소 운영시간) 상선관위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상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 제81조(투표절차)** ① 투표자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상선관위원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상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상선관위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 ③ 투표자는 배부받은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 제82조(투표자의 확인)** ① 투표소를 관리하는 상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로 투표자를 확인한다.
- ② 상선관위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제8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선본의 선본명·으뜸구호, 후보자의 성명·소속 및 학년(학번)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병렬로 배치한다.
 - ③ 투표용지는 만 원권 지폐의 크기(161*76mm)로 제작한다.

- 제84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① 상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상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상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투표함을 상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③ 상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투표함을 상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상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제8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상선관위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개표 가능 요건과 당선 요건은 본 세칙을 따른다.

제9절 참관인

- 제87조(참관인의 자격)** ① 각 선본은 상경·경영대학 투표구의 투표소당 1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상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본원 1인의 성명과 선본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관인에게 배부한다. 참관인은 명찰을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동일 선본 내의 다른 선본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④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협의한 기한까지 상선관위에 투표소 당 참관인 명단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씩을 선택하여 모든 참관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생증 사본
 - 2. 재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그 밖에 재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88조(참관인의 역할)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참관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중립적 투표 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표소 운영 30분 전까지 상선관위원과 함께 상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투표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89조(참관인의 제한)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부정행위로 간주할만한 행위
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② 상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상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상선관위는 전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이 속한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상선관위는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퇴장 조치 받은 참관인은 참관인 자격이 박탈되며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퇴장 조치 받은 참관인이 속한 선본에서는 해당 참관인 이외에 다른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90조(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참관인은 상선관위에 진행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상선관위원과 해당 선본을 제외한 나머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절 개표

제91조(개표의 담당) 개표는 상선관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각 선본의 개표 담당자로 차출한 선본원과 함께 할 수 있다.

제92조(개표의 참관) ①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개표 시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상선관위의 개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원에 대해서 상선관위는 개표의 참관을 불허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개표 시 상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선본은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상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3조(개표시작과 순서) ① 투표가 종료되면 상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상선관위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상선관위원 참석 및 각 선본 개표 담당자의 입회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③ 개표의 순서는 상선관위에서 정한다.

제9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상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2.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상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장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4.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5.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6.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7.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8.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한 것

제95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상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3. 후보자(기호·선본명·옴표구호·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가 된 것
4.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가 된 것
5.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96조(개표일과 개표 장소) ① 개표일은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개표 장소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97조(오차와 오차율) ① 오차는 “명부상의 투표자 수와 개표 완료 후 확인된 실제 투표자 수의 차(절대값)와 이중 투표 또는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100(%)”이다.

제98조(오차에 의한 재투표)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③ 재투표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 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99조(오차에 의한 결선투표) ①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③ 결선투표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제100조(자격박탈에 의한 재투표) ①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투표 개시 이후 개표 이전에 하나 이상의 선본이 자격 박탈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는 해당 선본의 자격박탈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③ 재투표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3일 동안 진행하고, 모두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절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 제101조(당선)**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50% 이상이고,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작을 시 해당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득표수 1위와 2위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작으면 득표수 1위인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02조(당선공고) 상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3조(이의제기)** ① 상선관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이 상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본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면의 제출은 상선관위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선본이 전항을 위반하여 상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상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회원이 상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면의 제출은 상선관위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⑤ 상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2절 선거 부정

제104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이중 투표, 그 밖에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상선관위,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상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23. 09. 13>
4. 그 밖에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제105조(선거 부정의 판단)** ① 상선관위는 제25조의 선거준비기간 또는 제26조의 선거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상선관위는 전항의 행위가 선거 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상운위는 전항의 안건이 상정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 ④ 상운위는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선거 부정으로 판단한다.
- ⑤ 상선관위와 상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⑥ 상선관위와 상운위는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절 당선무효

제106조(당선무효) 상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109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2. 선본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제104조의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 확정 공고 이전에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107조(당선무효의 공고) 상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절 재선거

제10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때
 2.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아니한 때
 3.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가 결정될 시 상선위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5절 징계

제109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상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104조의 선거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선본이 3회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3. 선본이 상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110조(제재조치) ① 상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선본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상선관위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무효로 한다.
 2. 상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제재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한다.
 3. 상선관위가 A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③ 상선관위는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와 “경고”를 구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상선관위는 선본이 “주의”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⑤ 상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 조치 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 ⑥ 상선관위는 “경고”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경고장은 A4용지 크기(297*210mm)로 한다.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사용한다.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한다.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한다.

제16절 선거의 종료

제111조(선거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는 종료된다.

1. 상선관위가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2. 상선관위가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제112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상선관위는 학생총투표의 제반업무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한

선거가 종료되는 즉시 해산한다.

제4장 상경·경영대학 학생총투표

제1절 통칙

제113조(학생총투표기간) 학생총투표기간은 학생총투표 실시 공고 시부터 의결사항 확정 공고 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학생총투표 실시 공고
2. 투표기간
3. 의결사항 공고
4. 이의제기 기간
5. 의결사항 확정 공고

제114조(투표권) ① 투표 실시 공고일로부터 7일 후 기준,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에게 투표권이 있다.

② 투표 실시 공고일로부터 7일 후 기준,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상선관위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이 있다.

제115조(투표인명부)

① 투표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소속·학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는 투표 실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선관위에 투표인명부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상선관위는 투표인명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선관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투표

제116조(투표방법) ① 학생총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전자투표로 하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한 용지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7조(점자투표보조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의 내용과 크기는 상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18조(투표기간) 상선관위는 학생총투표기간 중 3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9조(투표기간의 연장) 제118조에 따른 투표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상선관위는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3>

제120조(투표시간) 상선관위는 투표기간 중 구체적인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투표시간의 연장) 제118조에 따른 투표 마지막일과 제119조에 따른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3>

제122조(투표구의 지정) ① 상선관위는 투표 절차의 상세한 안내와 시각장애인용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투표구를 지정한다.

②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한 개 이상 지정한다.

1. 신촌캠퍼스

2. 국제캠퍼스

③ 상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23조(투표소의 설치) ① 상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개정 2023. 09. 13>

1. 해당 투표소의 상선관위원

2.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에 동행한 도우미

④ 상선관위원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124조(투표소 운영시간) 상선관위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25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상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절차) ① 투표자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상선관위원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원은 투표용지에 상선관위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③ 투표자는 배부받은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제127조(투표자의 확인) ① 상선관위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제1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서식과 규격은 상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상선관위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29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① 상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상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② 상선관위는 봉인한 투표함을 상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개표장으로 옮긴다.

③ 상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④ 상선관위는 투표함을 상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상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상선관위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개표 가능 요건과 의결 요건은 본 세칙을 따른다.

제3절 개표

제131조(개표의 담당) 개표는 상선관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2조(개표의 참관) ①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개표 시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상선관위의 개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원에 대해서 상선관위는 개표의 참관을 불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개표 시 상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3조(개표시작과 순서) ① 투표가 종료되면 상선관위의 감독하에 투표인명부를 검색하여 실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실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상선관위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상선관위원 참석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제13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상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2.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상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장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4.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5.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서로 다른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6.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7.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8. 투표인의 성명을 기입한 것

제135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상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상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3. 찬성·반대(기표)의 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가 된 것
4. 하나의 란에만 2번 이상 기표가 된 것
5. 하나의 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136조(개표일과 개표 장소) ① 개표일은 상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상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개표 장소는 상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137조(오차와 오차율) ① 오차는 “명부상의 투표자 수와 개표 완료 후 확인된 실제 투표자 수의 차(절댓값)와 이중 투표 또는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투표권자 수×100(%)”이다.

제138조(오차에 의한 재투표) ①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절 의결사항 공고와 이의제기

제139조(의결)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투표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0조(의결사항 공고) 상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의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1조(이의제기) ① 본회의 회원은 투표의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의결사항 공고 후 24시간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이 상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면의 제출은 상선관위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④ 상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5절 학생총투표의 종료

제142조(학생총투표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총투표는 종료된다.

- 1. 상선관위가 의결사항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2. 상선관위가 의결사항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제143조(상경·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상선관위는 선거의 제반 업무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한 학생총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산한다.